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12 . 20.>

법 무 부

수신자 강성준 귀하 (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)
(경유)

제 목 **정보 ([∨]공개 [] 부분 공개 [] 비공개) 결정 통지서**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 13640965	**접수일** 2025. 01. 11.

청구 내용	법무부 소관 훈령 및 예규 중 현재 유효한 훈령 및 예규의 명칭, 발령번호, 시행일, 소관 부서, 내용공개여부(공개, 일부 비공개, 비공개로 구분) ※참고: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공개 내용	강성준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합니다. (담당자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홍준호, 02-2110-3107) 붙임 훈령·예규 목록 각 1부. 끝.

공개 일시	2025. 01. 16. 16	공개 장소	
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개 방법	[] 열람·시청 [] 사본·출력물 [∨] 전자파일 [] 복제·인화물 [] 기타

수령 방법	[] 직접 방문 [] 우편 [] 팩스 전송 [∨] 정보통신망 [] 전자우편 등
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	계(①+②-③)
	0원	0원	0원	0원

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
.		[]
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비공개의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
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법무부장관

행정서기보 기은정 부이사관 김상권

협조자

시행 혁신행정담당관실-900(2025. 01. 16.)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

전화번호 02-2110-3060 팩스번호 02-2110-0318 / blue8198@korea.kr / 공개 구분

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]
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**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